

# 첨단 기능성 신물질 시스템 기초 연구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

제정 2014. 09. 24

개정 2016. 10. 01

개정 2017. 09. 20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 제15조의 위임을 받아 BK21 플러스 첨단 기능성 신물질 시스템 기초 연구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사업단 내부 사업비 집행 시 활용되며 「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(이하 “지침”), 「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, 「포항공과대학교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규정」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.

**제3조(사업기간)**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. 단 1차년도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 제 2 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

**제4조(사업단의 장)**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

② 사업단의 장은 탁월한 연구 경력을 갖추고 교육개혁 의지와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업단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

③ 사업단은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, 이직, 퇴직,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사업단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
④ 사업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,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 다만 사업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⑤ 1년 이내의 연구년, 해외 연구 활동, 파견 등으로 인해 사업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참여교수 중 한 명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을 대리하는 참여교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)**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

② 참여교수의 소속은 대학교 학과(학부)와 동일한 소속일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소속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에 전임발령을 받아야 한다.

③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단 참여를 인정한다.

**제6조(참여교수의 변경)** ① 사업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,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.

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③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)** ① 참여교수는 사업단의 중점연구분야와 전공이 부합하거나 기존의 3개 연구팀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신입교원이나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 사업단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.

③ 대체 또는 신규 선발 교수의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과 기존 참여교수의 평균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같거나 우수한 성과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④ 참여 중인 교수의 연구실적(최근 3년) 및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
⑤ 연구년(1년 이상) 또는 교내 중요한 보직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
⑥ 참여교수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직전의 소속(학과)에서 복귀를 요청받을 시 그 사유가 합당한 경우 참여교수 교체가 가능하다

⑦ 참여교수 변경은 BK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협약서, 신규 참여교수의 3년간 연구실적, 사업단 전체 참여교수의 3년간 연구실적, 재직증명서를 업로드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의 확인 및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참여대학원생)** 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(참여교수)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동일 사업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.
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
3.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

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.

- ③ 참여대학원생은 **BK21**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참여대학원생은 주 **40시간**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**4월 1일, 10월 1일**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**4대 보험**(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보험)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⑥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침 **[별표2]**에 따른다.
- ⑦ 사업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,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⑧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. 다만,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.
  1. 입학한 지 **2년**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  2. 입학한 지 **4년**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
  3. 입학한 지 **6년**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
- ⑨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당 **6학점**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.
- ⑩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연구 실적 및 기타(연구자등록번호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윤리서약서 등) 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다.

**제9조(지원대학원생)**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**BK21**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,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수의 **70%**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.

- ②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매년 책정되는 대학 지급기준 및 **BK21** 플러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하며 교수별 재량에 따라 교수 개인 연구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지원대학원생의 교수별 배분 기준은 제**14**조에 명기된 반기별 실시하는 사업단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단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차등 배분한다.

**제10조(신진연구인력)**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(이하 “신진연구인력”이라 한다)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대학의 인사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한다.

- ② 박사후과정생(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)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2.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**250만원**(월 지급액 **230.8만원**)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한다.

3.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
  2.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·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3.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(월 지급액 230.8만원)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.
  4.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·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. 다만, 박사후과정생 중 '리서치 펠로우'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.
- ⑤ 박사후과정생(리서치 펠로우 포함) 및 계약교수는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기당 6학점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으며,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사업단 내 교육·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로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**제11조(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)** ① 성과급 지급은 사업단장(운영위원회)이 사업단 내 참여교수의 우수한 연구성과,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다.

② 연구성과 및 사업단 기여는 제14조에 명기된 반기별 시행되는 사업단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높은 순으로 차등 배분한다.

③ 1인당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**제12조(대학원생 연구장학금)**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의 40% 이상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되, 지급 형태에 있어서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
1. 입학 후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 후 2년 이내의 석·박사통합과정생: 월 60만원 이상, 180만원 이내

2. 입학 후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 후 6년 이내의 석·박사통합과정생: 월 100만원 이상, 250만원 이내

(단, 학사경고자(평점평균 3.0 미만)에게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석·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박사자격시험에 통과한 다음 지급일부터 월 100만원 이상 지급이 가능하되 재학 학기가 4학기 이내인 경우 석사과정생 계정에서 지급한다)

③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사업단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교수별 실적을 고려하여 선발하며, 사업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교수별 장학금 지원액을 차등 배정한다.

**제13조(국제화 경비)** ①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정의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참석을 지원할 수 있다. (국제학회 기준: 4개국 이상 참여,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 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)

② 해외연수는 단기연수(국제학회)와 장기연수로 구분하되 15일 이내는 단기연수로, 15일 초과는 장기연수로 구분한다.

③ 연수경비는 대학 여비 기준 내에서 실제 경비를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단기연수(15일 이내) 경비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및 해외기관으로의 연수를 위한 항공료, 체재비, 학회등록비 등으로 집행한다.

⑤ 장기연수(15일 초과) 경비로는 항공료, 체재비를 지원하며 체재비는 교내 생활비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되 해외사정에 따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⑥ 연수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대학원생 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.

⑦ 국제학회 참가는 발표하는 논문의 제1저자로서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⑧ 국제학회 참가 시 포스터 발표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, 구두 발표의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년도 별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⑨ 3개월 미만의 장기연수는 5백만원 이내로, 3개월~1년 미만의 장기연수는 1천만원 이내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⑩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생 선발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각 연구 분야에서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며, 이를 토대로 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선발한다.

⑪ 해외학자 단기강좌 또는 세미나 개설 시 「대학 전문가 활용지침」 기준을 따르되, 사업단장(운영위원회)이 학자의 우수성을 판단(등급)하여 경비지원 범위를 결정한다.

⑫ 연수 및 석학 초빙 시 별표1에 따르되, 계획서를 사전에 결과보고서를 사후에 별표3 내지 별표8에 따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사업단 자체평가)** ① 자체평가는 반기(3월, 9월)에 1회 실시한다.

② 평가항목은 교육, 연구, 국제화, 봉사영역으로 구분한다.

③ 각 영역의 배점 및 평가지표는 사업단장(운영위원회)의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영역별 세부기준은 별표2에 정하는 바와 같다.

④ 평가결과는 교수인센티브, 지원대학원생 선발, 장학금 배분, 신진연구인력 평가에 활용한다.

**부 칙 (2014. 9. 24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,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, 추진실적,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·집행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 (2016. 10. 01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201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지침 시행이전에 수행되었거나,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, 추진실적,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·집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1] 국제화 경비 지원 세부기준

구분	지원기준		비고
국제학회 (단기연수)	항공료, 체재비, 학회비 등: 대학여비 기준 내 ※ 포스터 발표자는 최대 150만원, 구두 발표자는 최대 250만원 지원 (사업년도를 기준으로 1인 연간 최대 300만원) ※ 국제학회 참가자는 제1저자로서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자에 한함 ※ 국제학회는 사업년도 기준으로 연간 1인, 1회 지원 ※ 참여교수의 단독참가 및 논문지도교수로 동반 시에도 지원 불가		15일 이내
장기연수	항공료, 체재비: 대학여비 기준 내에서 지급하되 3개월 미만은 최대 5백만원, 3개월~1년 미만은 최대 1천만원		15일 초과 ~ 1년 미만
강사료	사업단 전문가 활용지침(대학 기준내): - S급(기관장, 저명인사) = 50만원 이내 - 1호(전임교원, 책임연구원 이상) = 30만원 이내 - 2호 (S급, 1호 이외) = 20만원 이내		1시간 기준
숙박비	POSCO 국제관 1박(조식 포함)		실비정산
회의비	1회 15만원 이내(1인 3만원 이내) (행사당 1회에 한하며, 종일행사 등 1회 이상 필요시 사전협의)		1일 1회
교통비	수도권	포항-서울 왕복항공료 (대학기준) 포항시내 왕복 택시비 정액 (2만원)	
	기타 지역	KTX, 리무진버스 등 왕복교통비 (대학기준) 포항시내 왕복 택시비 정액(2만원)	
기타	- 해외초청 강사에 대해서는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항공료, 체재비 등 추가지원 가능 - 해외학자 강사료는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산화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		

[별표2] 사업단 자체평가 세부기준

구분	평가지표	배점	세부기준
교 육	첨단재료과학부 강의개설 및 실적	8	초청세미나 0.5 / 타 학과 cross-listing 교과목 제외 (1학점당 최고 1점)
	대학원생 선발, 배출, 취업실적	13	학생 선발, 배출, 취업 1인당 1점
	참여대학원생 SCI 논문 환산 편수	5	발표 논문의 편수 * 가중치 - 국내저널 가중치 1 - 국제저널 가중치 2
	참여대학원생 SCI 논문 환산 IF	6	발표 논문의 환산 IF - 저널 IF * 가중치 적용 편수
	참여대학원생 학술대의 발표실적	5	발표건당 1건당 * 가중치 - 국내학회 가중치 1 - 국제학회 가중치 2
	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	3	신진연구인력의 조사시간 내 참여기간
	신진연구인력 SCI 논문 환산 편수	1	발표 논문의 편수 * 가중치 - 국내저널 가중치 1 - 국제저널 가중치 2
연 구	참여교수 연구비 수주실적 (건)	5	정부, 산업체, 기타연구비 수주실적 - 평가기간 내 시작 연구과제
	참여교수 연구비 수주실적 (수주액)	8	
	참여교수 1인당 SCI 논문 환산편수	11	발표 논문의 환산편수 - 주저자(제1저자, 교신저자) 비중 0.8 - 기타저자 비중 0.2 - 저자 수에 따라 비중 배분
	참여교수 1인당 SCI 논문 환산IF	13	저널의 IF * 환산편수 - 기준 IF (최신 JCR 기준)
	참여교수 1인당 지식재산권 출원/등록	6	출원 3%, 등록 3% (건당 최고 0.5점) - 평가기간 내 출원한 지식재산권
	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	6	기술이전 시 1점 - 평가기간 내 기술이전
국 제 화	외국인 재학생	3	참여대학원생 중 외국인 재학생
	참여교수 국제적 학술활동 실적	7	국제 초청/기초 강연, 국제학회조직, 국제저널활동
봉 사	입시 홍보 활동	3	학과 대표로 참가 (건당 최고 교내 0.3 점, 교외 0.5점)
	대학 제위원회 활동	4	학과 대표로 참가 (건당 최고 0.3점)
	교내외 수상 실적	3	기간 내 수상 (건당 최고 0.5점)



[별표3]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 지원신청서



##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 지원신청서

대 상 자	성명		직번 (학번)		연락처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 참가시 (학생 :   명,   신진연구인력 :   명,   교수 :   명)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post-doc.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원생 (석사, 박사, 통합)					
참가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학술회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단기해외연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해외연수					
논문제목						
논문저자						
연수목적 및 내용						
장 소	국 명		도시명			
	기관명					
기 간	년   월   일 ~   년   월   일 (   박   일)					
비 용	구 분	금액 (원)		세부내역		
	항공료					
	체제비					
	학회비					
	기타 (국내항공료)					
	계					
※ 첨부 : 발표논문 사본, 참가계획서, 초청서 등 기타 참가증빙 자료						

작 성 일 :   년   월   일  
 신 청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  
 지도교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첨단 기능성 신물질 시스템 기초 연구 사업단

[별표4] 장·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계획서



장·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 계획서

구 분	내 용
기 관 명	
연수계획 (일정 등 구체적으로 기술)	
연수내용 (구체적으로 기술)	

작성일 :       년     월     일  
 신청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  
 지도교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첨단 기능성 신물질 시스템 기초 연구 사업단



[별표6] BK21 플러스 사업 국제학술대회 확인서



**BK21 플러스 사업 국제학술대회 확인서**

- 학 회 명 :
  
- 논 문 명 :
  
- 저 자 명 :
  
- 개최기간 :
  
- 개최 국 :
  
- 홈페이지 주소 :

인정 · 지원 기준	기준 충족 여부확인	비 고
4개국 이상(한국포함) 발표		
총 구두발표논문이 20건 이상		
전체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기관 소속이 50% 이상		

위의 국제학술대회는 BK21플러스 사업이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학술대회임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: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  
신청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  
지도교수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**첨단 기능성 신물질 시스템 기초 연구 사업단장**

[별표7] 전문가 초청 계획서



전문가 초청 계획서  
 초청 세미나 계획서

초청인	성명		연락처	054-279-0000
	소속	첨단 기능성 신물질 시스템 기초 연구 사업단		
피초청인 (전문가) 인적사항	성명		국적	
	소속	00대학교 00학과	최종학위	
	전문분야 / 업적			
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(제목 및 내용)				
일시	201 년 월 일 00:00 ~ 00:00			
장소				
초청비용 산출내역	구분	금액 (원)	산출근거	
	자문료		사업단 자체규정 (0급 기준) / 계좌이체	
	교통비		실비정산(증빙첨부)	
	식비		실비정산(BK연구비카드)	
	숙박비		실비정산(BK연구비카드)	
	합계	0		
	◎ 합계에는 자동계산식이 setting되어 있습니다.			
자문료 입금정보	예금주		은행명	
	계좌번호			
정산과제	과제번호		예산항목	국제협력경비
◆ 첨부서류 ◆ ▶ 이력서, 또는 업적자료 등 ▶ 발표초록 또는 자문내용 (abstract) ▶ 초청 자문료 영수증 ▶ 피초청인 신분증(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) ▶ 피초청인 통장사본				

20 년 00 월 00 일

초청교수 : (서명/인)

※ 첨부서류(공통): 발표초록 또는 자문내용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 
 단, 국외연사의 경우 여권사본(출입국 증명), 항공료 영수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



## 해외 석학 초청 보고서

초청연사 인적사항	성명 :
	학위 :
	국적 :
	소속 :
초청기간	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초청목적	
초청연사 활용사항 및 파급효과	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초청교수

(인)

첨단 기능성 신물질 시스템 기초 연구 사업단

[별표9] BK21 교육/워크숍 참가비용 신청서



## 교육 / 워크숍 참가비용 신청서

신청자		학번	
지도교수		연락처	
일정		개최장소	
교육 프로그램명			
교육참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			
교육참가 후 기대효과			
교육과정등록 비용			

※ 교육참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5줄 이상 기재 요청

위와 같은 목적으로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인)

지도교수 : (인)

첨단 기능성 신물질 시스템 기초 연구 사업단



[별표10] 영수증(초청 자문료/강사료) Receipt



## 영수증(초청 자문료 / 강사료) Receipt

첨단기능성신물질시스템기초연구사업단장 귀하  
 POSTECH To (Name of Recipient)

(단위 : 원)

구분 List	금액 Amount	비고 Remarks
자문료 Advisory Expenses		
교통비 Traffic Expenses		
숙박비 Accommodations Charges		
<b>총지급액 Total Money (A)</b>	<b>0</b>	

소득세 National Wage Tax		(A) × 4%
주민세 City Tax		(A) × 0.4%
<b>공제액 Total Tax (B)</b>	<b>0</b>	(A) × 4.4%

<b>실수령액 Total Receipt (A-B)</b>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.

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amount were duly collected.

201    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  
 Year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Month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Day

주민등록번호  
 Residence Reg. Number  
 \_\_\_\_\_  
 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소  
 Address  
 \_\_\_\_\_  
 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/서명)  
 Name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Stamp)

첨부: 피초청인 **신분증** (또는 여권사본), **통장사본** (또는 외환송금신청서), **교통비영수증** 및 기타 실비정산 영수증

※ 첨부서류(공통): 발표초록 또는 자문내용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 
 단, 국외연사의 경우 여권사본(출입국 증명), 항공료 영수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